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81호

2023. 5. 1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7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856호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4
- 삼척시 공고 제2023-85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9
- 삼척시 공고 제2023-858호 2023/2024년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 계획 공고 -----12
- 삼척시 공고 제2023-860호 원당동 도시계획도로(소로1-48호선) 개설공사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18
- 삼척시 공고 제2023-866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재공고) -----24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3-76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6.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27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0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27	20230516	신규 부여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 96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길 39	20230516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b>이</b>	<b>하</b>	<b>여</b>	<b>백</b>	

**삼척시 공고 제2023-856호**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 일

**삼척시장**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안**

**1. 신설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강설.대설.계절성 폭설 등 설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설작업에 동참한 자원봉사자들의 유류비 인상, 빙판길 사고 위험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해(雪害) 대책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2023년 6월 7일까지 삼척시장(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건설과(도로관리부서)
- 전화 : 033-570-3494
- FAX : 033-570-3144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한 장비(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보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읍·면·동에 배정한 제설장비는 읍장·면장·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총괄 관리·감독은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및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면·동별로 선정하고 관리하며,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은 총괄 관리자가 실시한다.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을 위한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안

▣ 의견제출자 :

신 설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857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3. 5. 17. ~ 2023. 6. 1.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3. 6. 2.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최명○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03-11 연면적(34.7㎡), 목조,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17.

## 삼 척 시 장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969

삼척시 공고 제2023 - 858호

## 2023/2024년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공고

2023/2024년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2023. 6. 14.(수) 까지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 033-570-3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발계획 수면 도면은 삼척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 삼척시장

### □ 제출서류

1.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
2.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양식업)면허증 또는 어업(양식업)허가증 사본[어업(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5.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6. 어업(양식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 2023~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신청내용					승인여부		검토결과 (승인조건)
어업별	위치	수면번호	면적	개발사유	승인	불승인	
<b>소계</b>		<b>1개소</b>	<b>4.5ha</b>		<b>4.5ha</b>	<b>-</b>	<b>▪ 정치망어업 : 1건/ 4.5ha</b>
정치망	상맹방리 지선	①	4.5	대체개발 (이설)	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정치망(제2021-1호)을 동일 면적으로 이설</li> <li>◦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li> </ul>

### □ 2023~20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신청내용					승인여부		검토결과 (승인조건)
어업별	위치	수면번호	면적	개발사유	승인	불승인	
<b>소계</b>		<b>3개소</b>	<b>23.0ha</b>		<b>23.0ha</b>		<b>▪ 복합양식업 : 3건/ 23.0ha</b>
복합양식 (수하식)	임원리 지선	②	8.0	재개발 (기간만료)	8.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복합양식(제2021-2호)을 동일 면적으로 이설</li> <li>◦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li> <li>◦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li> </ul>
복합양식 (수하식)	덕산리 지선	③	5.0	재개발 (기간만료)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복합양식(제2005-10호)을 동일 면적으로 이설</li> <li>◦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li> <li>◦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li> </ul>
복합양식 (혼합양식)	광진리 지선	④	10.0	대체개발 (이설)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복합양식(제2009-3호)을 동일 면적으로 이설</li> <li>◦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li> <li>◦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li> </ul>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포획물·채취물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제 호	면적: ha	m
		수심: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삼척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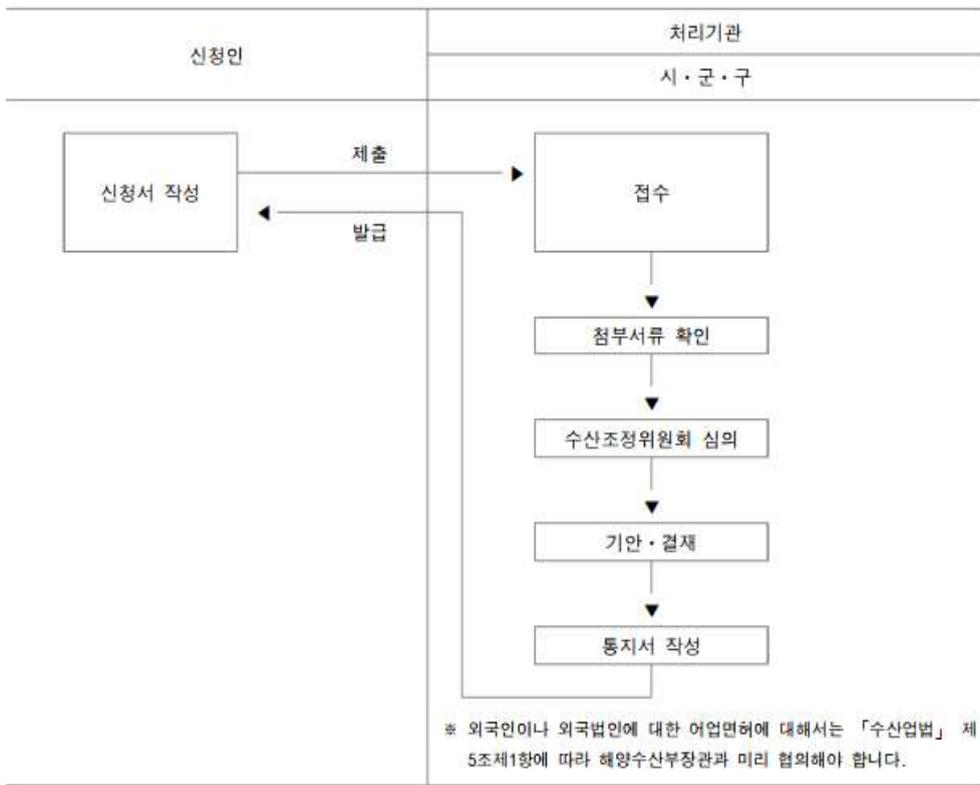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2. 3.>

###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 계획 내용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수산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여권번호 기재는 외국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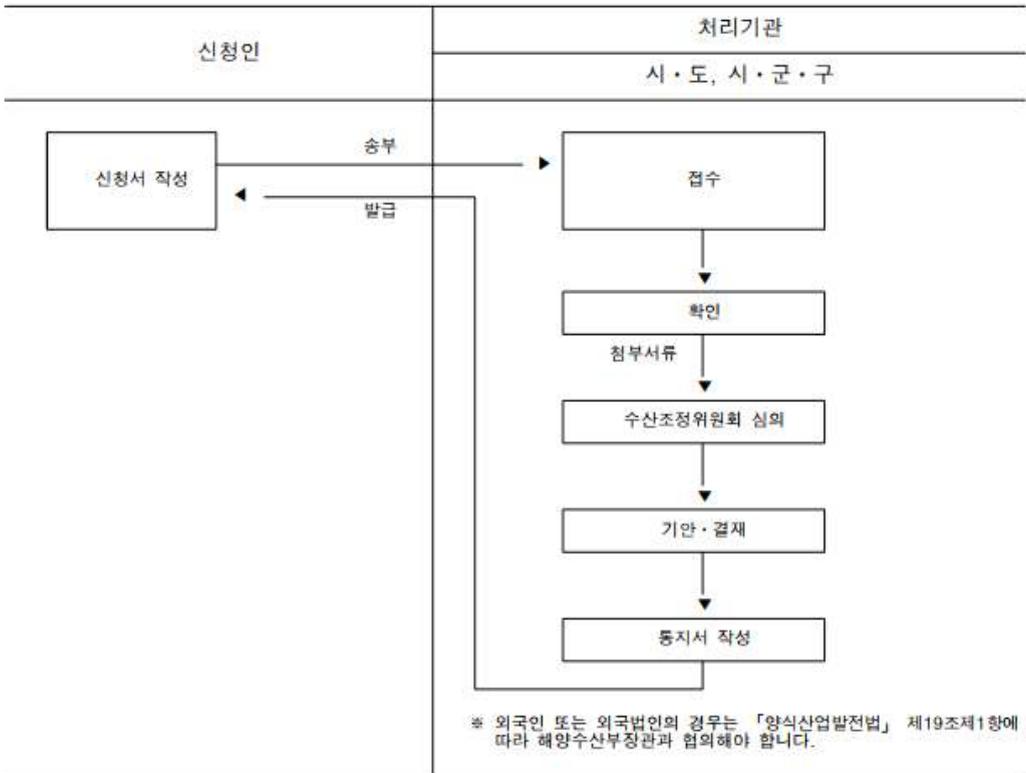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p>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p> <p>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p> <p>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p> <p>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p> <p>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p> <p>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p> <p>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p> <p>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합니다)</p> <p>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위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합니다)</p> <p>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p>
------	---

**처 리 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3 - 860호

##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원당동 도시계획도로(도로:소로1-48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9일

삼척시장 (인)

- 1.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도시과장)
- 2. 사업명 : 원당동 도시계획도로(소로1-48호선) 개설공사
- 3. 사업개요
  - 가. 위치 : 삼척시 원당동 100-2번지 일원
  - 나. 사업내용 : 소로1-48호선 도로개설 L=70.0m B=10.0m
- 4. 토지출입 및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 5. 19. ~ 2023. 6. 5.(게재일로부터 17일간)
- 6. 열람장소
  - 삼척시 도시과 도시개발부서 (☎ 033-570-3449)
- 7. 이의신청
  - 보상계획공고 다음날부터 17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보상시기

가. 열람.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자 선정 개별 통지  
 ※ 보상시기는 보상예산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계약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9.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절차 : 물건소유자와 협의 계약하되, 협의불응 시 수용재결 신청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나.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함.
- 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삼척시 도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		소유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평가업자
	지번	면적(m <sup>2</sup> )	주소	성명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과 (☎ 033-570-344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또는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관계인)	
대상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 요지 및 이유		

원당동 도시계획도로(소로1-48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삼척시장 귀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 사업명 : 원당동 도시계획도로(소로1-48호선) 개설공사

가. 토지조서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지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1	삼척시 원당동	111-8	도	80	60.8		삼척시				
2		111-2	대	62	51.3		강원도 (교육감)				
3		111-1	대	475	52.5	삼척시 원당동 ***_*	대***교				
4		100-3	종	766	1.9	삼척시 ***로 ***_**	조**				
5		100-1	대	455	417.1		건설교통부				
6		100-2	도	394	294.8		기획재정부				
7		100-6	전	60	29.7		삼척시				
8		100-17	도	385	31.5		건설교통부				
9		100-16	도	56	37.8		기획재정부				
10		100-18	도	49	46.7		삼척시				
11		99-3	도	28	22.6		삼척시				
12		99-2	도	438	252.8		강원도 (교육감)				
13		114	학	10,638	25.2		건설부				
14		100-8	도	3,604	9		건설교통부				
15		100-15	도	36	1.4						
합계				17,526	1,335.1						

## 나. 물건조서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삼척시 원당동	100-1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시멘트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97.2	조**	삼척시 ***로 ***.**			

※ 자세한 물건조서의 경우 소유주에게 발송

**삼척시 공고 제2023- 866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삼척시장**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용자금 추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 제고 및 일반 주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나. 이차보전 용자 추천 한도액 상향 조정(안 제6조)
  -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업, 자동차정비업, 여관업, 목욕업, 교육 서비스업 등 5천만원 이내 → 7천만원 이내

-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기간 정비 (안 제10조)
  - 2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 3년 이내
- 라.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 제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2023년 6월 7일까지 삼척시장(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경제과(시장육성부서)
- 전화 : 033-570-3357
- FAX : 033-570-3140

###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한”을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의 추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삼척시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을 “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를 “시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38조에 따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진흥지구개발 사업시행자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용자추천대상)”을 “(용자 추천 대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 지급,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2. 시설자금: 시설의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3. 소상공인 지원 자금

제5조의 제목“(대상자의 선정)”을“(용자 추천 신청 및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용자추천 신청서를”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로 한다.

-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한다”를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업체별 지급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매출액 범위 내”를 “매출액의 범위”로,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중소제조업 : 1개업체당”을 “중소제조업: 업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신공사업 : 1개업체당”을 “통신공사업: 업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진흥지구 내”를 “진흥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운송업체 :”를 “운송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반음식점업 : 5천만원”을 “일반음식점업: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운송업체 : 5천만원”을 “운송업체: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세탁업 : 3천만원”을 “세탁업: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의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한도액내에서 증액하여 추가로 융자추천 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규제중”을 “규제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을 “육성자금 융자조건”으로, “보전(이하 “이차보전 또는 보조금” 이라 한다)등”을 “보전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 용도에 사용할”을 “외의 용도로 사용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융자선정을”을 “융자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이내에”를 “안에”로, “않을 때”를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조치의견을 통보 받은 관계금융기관”을 “제1항 따라 시장의 조치 의견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2. 융자금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융자금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의 제목 “(이차보전 등)”을 “(융자 기간 및 이차보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전부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융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운전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고”를 “운전자금은 1년 이내이며”로, “있을 시 1회에 한하여”를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자금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을 “시설자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이율”을 “이차보전 이자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진흥지구 내의”를 “진흥지구로”로, “이전기업 :”을 “이전 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지역 내의”를 “그 밖의 지역으로”로, “이전기업 :”을 “이전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3. 소상공인: 시중은행 금리 중 3%를 융자기간동안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융자 추천을 하는 경우, 융자 기간 및 이차보전은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융자에”를 “융자 추천에”로, “삼척시융자추천심의위원

회(이하“위원회”)를 “삼척시용자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용자추천 대상자”를 “용자 추천 대상자”로, “용자 추천금액, 순위결정”을 “용자 추천액, 순위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삼척시 경제진흥국장,”을 “시 경제진흥국장, 시”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를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를 소집하며”를 “소집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용자 계획 공고) 시장은 자금의 용자 실시 이전에 총액, 한도, 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용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사항은”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한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lt;신설&gt;</p>	<p>제1조(목적) ----- ----- ---- 제17조에 따라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li> <li>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li> <li>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li> <li>4.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과 소상공</li> </ol>

제2조(융자추천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및 건설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가동 중인 업체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의 추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삼척시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융자 추천 대상) -----  
 ----- 제2조에 따른 -----  
 -----  
 ----- 자  
금 -----  
 -----  
 ---.  
 1. -----  
 -----  
 -----,  
 가. -----  
 ----- 시에 --  
 -----  
 -----  
 나. -----  
 -----  
 ----- 제38조에 따라 -----

의거 공장 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다.·라. (생략)

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3.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

4. ~ 7. (생략)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운송업체

10. (생략)

11. 기타 소상공인

제3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종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종류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을 말한다.

제4조(융자추천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  
-----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  
-----

다.·라. (현행과 같음)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3. ----- 제4조에 따른 -----

4. ~ 7. (현행과 같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의 ---

<삭 제>

제4조(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의 선정) <신 설>

시장은 용자추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 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용자추천 심사 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정하여 용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용자금추천한도액) 지원대상 업체의 용자추천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한다.

- 1.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1. 운전자금: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 지급,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2. 시설자금: 시설의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3. 소상공인 지원 자금

제5조(용자 추천 신청 및 선정)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  
-----  
-----  
-----  
-----  
-----

제6조(용자금추천한도액) -----  
-----  
--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업체별 지급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1. -----  
----- 매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업체별 지급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제조업 : 1개업체당 3억원 이내

나. 일반건설업(건축·토목),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 1개업체당 2억원 이내

2. 시설자금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총 소요자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로 한다.

가.·나. (생략)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 시설비

라. (생략)

3. 건설업, 지식·정보관련 업종 및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 1억원 이내

4.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점 : 5천만원 이내

5. 자동차정비업, 여관업, 목욕업, 교육서비스업, 화물자동차

의 범위-----

----- 다음 각 목--

가. 중소제조업: 업체당 -----

나. -----

----- 통신공사업: 업체당 -----

2. ----- 각 목-----

-----

-- 범위-----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진흥지구-----

-----

-----

라. (현행과 같음)

3.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업체: -----

4. ----- 일반음식점 : 7천만원 ----

5. -----

-----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  
업체 : 5천만원 이내  
 6. 이·미용업, 세탁업 : 3천만  
원 이내  
 7. 삭 제  
 8. 기타 소상공인 : 3천만원 이  
내  
 제6조의2(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용자금추천한도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한도액내에서 증액하여  
추가로 용자금추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13.>  
 제7조(용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용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  
 처로 규제중인 업체  
 3. ~ 5. (생 략)  
 제8조(협약체결)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조

----- 운송  
업체: 7천만원 ----  
 6. ----- 세탁업: 5천만원 -  
 -----  
 8. 그 밖의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제6조의2(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용자금추천한도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한도액내에서 증액하여  
추가로 용자금추천 할 수 있다.  
 제7조(용자승인 제외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현행과 같음)  
 2. -----  
 -- 규제 중-----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협약체결) ---- 육성자금  
용자금조건-----

건, 용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  
로 보전(이하 “이차보전 또는  
보조금” 이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9조(용자금의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  
 천으로 용자금을 받은 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용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  
 용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운영이 불 건실하며 자  
 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선정을 받은 경우
5. 법령위반 및 대출완료 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  
 수하지 않을 때

-----  
 -- 보전 등 -----  
 -----  
 -----  
 -----.

제9조(용자금의 환수조치 등) ①  
 ---- 제5조에 따른 -----  
 -----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외의 용도로 사  
 용한 -----  
 --
2. 용자금 지원 사업의 목적 달  
 성이 불가능할 때
3. 용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거짓 -----  
 용자를 -----
5. -----  
 ----- 안에 -----  
 ----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조치의견을 통보 받은 관계금융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 등) ① 이차보전 기간은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 1. 운전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기간은 1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업의 경영압박)가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 2. 시설자금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②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의 입주 및 이전기업 : 6% 이내
- 2. 기타 지역 내의 입주 및 이전

② 제1항 따라 시장의 조치 의견을 받은 금융기관----- 없으면 ----- 하여야 -----.

제10조(용자 기간 및 이차보전)

① 용자금은 용자기간 내에 전부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용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전자금은 1년 이내이며 -----  
-----  
-----  
-----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  
--.
- 2. 시설자금-----  
-----  
--.
- 3.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이차보전 이자율-----  
-----  
--.

- 1. ----- 진흥지구로 -----  
--- 이전 기업: -----
- 2. 그 밖의 지역으로 --- 이전

기업 : 5% 이내

<신 설>

③ 소상공인의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율은 시중은행 금리 중 3퍼센트를 융자기간동안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조의2(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차보전 등)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융자추천을 하는 경우, 이차보전 및 상환기간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3.13.>

제11조(융자추천심의위원회) ①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융자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기업: -----

3. 소상공인: 시중은행 금리 중 3%를 융자기간동안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의2(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차보전 등)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융자 추천을 하는 경우, 융자 기간 및 이차보전은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융자추천심의위원회) ① 융자 추천에 -----  
--- 삼척시융자추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자추천 대상자 선정, 업체별 용자추천금액, 순위결정 등

2. 기타 용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삼척시의회의원, 삼척시 경제진흥국장, 상공회의소사무국장, 지역경제관련단체장,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⑤ (생략)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용자 추천 대상자 -----  
-- 용자 추천액, 순위 결정 --  
-----

2. 그 밖에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시 경제진흥국장, 시 -----  
-----  
----- 위촉하며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소집하며 -----  
-----  
-----.

⑦ -----  
-----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p>제12조(용자계획공고) 시장은 당 해연도 용자계획을 매년 1/4분 기 내 또는 경기 침체 등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기에 총액, 한도액, 용자조건, 용자 신청절차 등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용자 계획 공고) 시장은 자금의 용자 실시 이전에 총액, 한도, 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 된 용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운영 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사 항 이외의 사항은 「삼척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 다.</p>	<p>제13조(준용) ----- ----- 조례에서 ----- ----- 경우에는 ----- ----- --.</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 -- 필요한 ----- -----,</p>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